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7. 4. 평창군수(민방위재난관리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8. 8. 6.
- 다. 상정일자 : 1997. 8. 12 제58회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평창군재난관리기금
(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
1천분의 2)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, 기금의
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,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(안제2조)
- 나.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(안제3조)
- 다. 영제54조제1항제4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"사업은
다음과 같다.(안제5조)
 - 1) 재난발생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
 - 2)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
 - 3) 재난대비 교육·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
 - 4) 재난대비 물자·자재·장비의 구입 및 정비
 - 5)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라. 군수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의
일부를 용자 지원할 수 있으며,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.
(안제6조)

- 1) 용자는 총소요금액의 50%이하로 하되,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.
 - 2) 이율
 - 민간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: 연8%
(연체이자율 : 연10%)
 -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: 연5%
(연체이자율 : 연8%)
 - 3)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.
- 마.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 (안제8조)
- 바.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한다. (안제10조)
- 사.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.(안 제11조)

4. 점 토 의 건

- 가. 재난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"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(당초 1,520만원 확보)하여 이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지방비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나
- 나.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전에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함.
- 다.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은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,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.